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03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김선교 · 서천호 · 김상훈
김위상 · 구자근 · 김성원
최은석 · 박수민 · 박충권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한한다)가 재혼한 때(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	2. <u>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한한다)가 재혼한 때(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